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656
----------	-------

발의연월일 : 2024. 4. 30.

발 의 자 : 윤미향 · 윤재갑 · 위성곤
주철현 · 송옥주 · 윤영찬
신정훈 · 이수진^(배) · 이원택
양경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용자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관련 신청서 서식에 따라 경영주인 농업인과 공동경영주를 포함한 경영주외의 농업인으로 구분하여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농업인이 경영주 또는 경영주와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농업정책,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고 농업인의 지위에 맞는 합당한 대우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체는 남성 위주의 농가 단위로 설계되어 있어 여성농업인의 독립적인 법적지위가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임. 또한 현행법은 세대 내 공동경영주는 한 명으로 한정되고 있어, 농업소득 감소로 농외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인 등록에서 배제되어 정부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공동경영주 개념을 현행 농가 단위에서 농업인

으로 확대하여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농업경영체등록에 따른 정부 융자 및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동경영주”란 경영주 외의 가계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외 배우자 또는 가족 구성원에 해당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이 경우 생업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농업 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공동경영주에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보조금 지급대상자) 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농업경영체인 농업인이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공동경영주
3. 「농지법」 등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농업인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업대상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9. <u>“공동경영주”란 경영주 외의 가계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외 배우자 또는 가족 구성원에 해당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이 경우 생업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농업 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공동경영주에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제4조의2(보조금 지급대상자) ①</u> <u>제4조에 따라 등록한 농업경영체인 농업인이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u>
<u><신설></u>	

	<u>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u> <u>2. 공동경영주</u> <u>3. 「농지법」 등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농업인</u> <u>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업대상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